

# 의 정 정 보

2008 - 1

1. 10.

---

1.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2.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12
3. 최근 타 시·도 제정조례	38
4.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46
<부록> : 행복한 책읽기	66

---

##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 ① 공개장소 연설·대담 연설원의 실비 지급

#### 《질 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원에 대한 실비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신속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원의 실비 지급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귀 위원회가 제작·배포한 「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실무」(2007. 11 발행)에서는 이를 위법비용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사례는 아니지만, 귀 위원회의 질의회답 안내(법규해석과-3114) 「방송연설 연설원에 대한 사례금 지급에 관한 질의회답」답변에 “그 연설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의거 실시하는 연설원에 대한 실비 지급이 귀 위원회 질의회답 안내(법규해석과-3114) 「방송연설 연설원에 대한 사례금 지급에 관한 질의회답」에서와 같이 실비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2. 문 1의 연설원에 대한 실비지급이 가능하다면 그 통상적인 지급기준(예 :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 기준)과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한지를 신속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11. 30.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오충일 질의)

#### 《답 변》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79조에 규정된 연설원에게 그 연설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연설원이 속한 해당 선거연락소의 장에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수당·실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이 경우 그 금액 범위 안에서 보전할 수 있을 것임. (2007. 12.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2] 선거기간 중에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 《질 의》

지난 2007. 12. 6(목)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총기탈취사건과 관련, 12. 9.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국방부로부터 범인 조기검거를 위해 전국적으로 임시반상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4항에 의하면 '선거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사안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여 선거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를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상회 안건

- 총기탈취 사건 관련 용의자 몽타주 배부 및 주민신고 요령 등 홍보.  
(2007. 12. 9. 행정자치부장관 질의)

### 《답 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선거기간 중에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 것임. 이 경우 반상회를 개최함에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007. 12.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3] 컴퓨터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 《질 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자메시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이번 대통령선거(2007. 12. 19.)와 함께 치러지는 구의회의원 보궐선거 캠프입니다. 후보자의 친구나 동료들이 후보자를 대신해 핸드폰을 이용하여 문자홍보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또는 기기를 이용하여 유료로 다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네이트온이나 여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후보 아닌 친구나 동료나 지인과 유권자 등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보내는 제한이 있는지,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어떠한 제한 등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 전송방법은 유료/무료 동일. 단, 무료의 경우 전송 건수 등에 제한(월100건 등)
  - 동시 전송 : 무료(10 ~ 20건), 유료(대량 가능)
  - 미리 입력된 전화번호 목록 파일(엑셀) 불러오기 기능 제공(유/무료 모두)
- (2007. 12. 8. 원대식 질의)

## 《답 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에서 누구에게나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문자메시지 무료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통상적인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보아 무방할 것임.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의 규정을 준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야 할 것임. (2007. 12.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4] 공개장소 연설·대담 연설원의 실비 지급

### 《질 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원에 대한 실비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신속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원의 실비 지급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귀 위원회가 제작·배포한 「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실무」(2007. 11 발행)에서는 이를 위법비용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사례는 아니지만, 귀 위원회의 질의회답 안내(법규해석과-3114) 「방송연설 연설원에 대한 사례금 지급에 관한 질의회답」 답변에 “그 연설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의거 실시하는 연설원에 대한 실비 지급이 귀 위원회 질의회답 안내(법규해석과-3114) 「방송연설 연설원에 대한 사례금 지급에 관한 질의회답」에서와 같이 실비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2. 문 1의 연설원에 대한 실비지급이 가능하다면 그 통상적인 지급기준(예 :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 기준)과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한지를 신속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11. 30.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오충일 질의)

《답 변》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79조에 규정된 연설원에게 그 연설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연설원이 속한 해당 선거연락소의 장에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수당·실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이 경우 그 금액 범위안에서 보전할 수 있을 것임. (2007. 12.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5] 아파트단지 내에서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 《질 의》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하고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선거기간 중 아파트단지 내에서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
2. 선거기간 중 아파트단지 내에서 소음 등을 이유로 연설·대담차량의 진입을 거부하는 것이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지 여부
3. 선거기간 중 소음 등을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연설·대담차량의 진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07.12.4. 국회의원 심재철 질의)

### 《답 변》

귀문의 아파트단지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될 것임.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그로인한 민사·형사책임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님. (2007. 12.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6]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선거운동지원 가능여부

### 《질 의》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선거운동지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정당의 후보자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할 경우,

1. 당 대표자가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내에 선거대책본부위원장이나 일반위원으로 참여가능한지 여부
2. 당 대표자(시·도당 대표자 포함), 국회의원, 당원협의회장, 차기총선 입후보예정자가 무소속 후보자의 연설회원으로 등록가능한지 여부
3. 당직자(원·내외불문)가 당직을 사퇴하고 평당원으로 무소속 후보자의 연설회원으로 등록가능한지 여부
4. 정당의 당사나 정당선거사무소에 무소속 후보자의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5. 공직선거법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 활동의 규제제한을 받는지 여부
6. 정당이 수령한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무소속 후보자에게 대여 또는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7. 정당의 당비를 무소속 후보자에게 대여 또는 지원 가능한지 여부
8. 정당이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정당이 행한 활동에 소요된 경비를 당해 정당의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경우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9.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후원회를 둔 경우 대통령 후보자 사퇴 후 모금 가능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2007. 12. 3. 국민중심당 사무총장 권선택 질의)

## 〈답 변〉

### 1. 문 1·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대통령선거에서 정당간에 또는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간에 선거공조를 위하여 후보자를 단일화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나 그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 등이 단일화된 후보자나 그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의 간부나 구성원 또는 연설회원이 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4조 및 제88조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 2.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의 당사나 정당선거사무소와 구획하여 별도로 선거연락소

를 설치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3. 문 5에 대하여

귀문과 같이 정당이 무소속 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선거와 관련 있는 활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제9장의 제 규정이 적용될 것임.

4. 문 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소속 후보자에게 대여하거나 지원할 수 없을 것임.

5. 문 7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당비를 무소속 후보자에게 대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 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무소속 후보자에게 이를 지원하는 것은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조 및 제45조에 위반될 것임.

6. 문 8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이며, 「공직선거법」 제119조제1항 후문과 같이 후보자 등과 통모하여 지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7. 문 9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가 사퇴한 때부터 그 정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의 후원회에는 「정치자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모금한도액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임. (2007. 12.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 7] 방송연설시 연설하는 모습외의 다른 내용의 방영

### 《질 의》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직선거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4항에 관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바랍니다.

1. 방송연설시 수첩이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후보자나 연설원이 연설하는

모습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규에 어긋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2. 방송연설시 춤추는 모습을 방영하는 것은 ‘후보자나 연설원이 연설하는 모습 외에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규에 어긋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2007. 12. 14. 한나라당 사무총장 질의)

## 《답 변》

문 1·2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71조에 따라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 후보자·연설원이 연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연설을 하면서 춤을 추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연설하는 모습 외에 사진 등을 방영되게 하는 것은 연설하는 모습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위반될 것임. (2007. 12.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8] 고지벽보·현수막 등을 이용한 당선·낙선사례

### 《질 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소속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통상적으로 선거일 후 당선자 또는 낙선자의 당선·낙선사례가 있어왔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도 선거일후 고지벽보·현수막·연설차량 등을 이용하여 당선·낙선인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이미 2008. 4. 9 실시될 예정인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일전 180일이 도래하였는바, 이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즉, 공직선거법 제90조 또는 제93조 등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1. 정당이 그 명의로 벽보를 이용하여 당선·낙선사례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정당이 그 명의로 현수막을 이용하여 당선·낙선사례를 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3. 정당의 당직자인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가 당선 또는 낙선사례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8조제3호에 따라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한 당선·낙선사례 가능여부 (2007. 12. 14. 김선경 질의)

## 〈답 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의 당사나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차기 선거에서 자신 또는 소속 정당을 선전하는 행위를 함이 없이 단순히 당해 정당 추천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사례의 인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입후보예정지역을 순회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당선·낙선사례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로 보아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7. 12.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9] 후원금 납부자에 대한 감사 전화 등 대행

###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리서치 전문기관으로서, 선거 여론조사 및 각종 공공기관의 만족도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치후원금 관련 ‘해피콜’ 대행의뢰가 접수되어 국회의원 후원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한 ‘해피콜’ 대행업무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하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정치자금법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에 따라 국회의원후원회는 후원회사무실을 두고 정치자금후원금 납부자들에 대한 해피콜(감사인사), 정치자금 영수증 또는 감사장 등을 우편발송 등을 통하여 후원회원에 대한 관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원회의 회원수 증가에 따라 현재의 후원회사무소 관리인력으로 회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당사와 같은 외부전문기관이 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후원금 납입자에게 감사전화를 하거나 후원회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우편(또는 택배)로 발송하기 위한 우편물 수령주소를 확인하거나 확인한 주소로 영수증을 발송하거나 영수증 수령여부를 확인하는 전화업무 등을 할 수 있는지?

※ 해피콜 예시) 안녕하세요? ○○○의원 후원회사무실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께 후원금을 입금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전화 드렸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2. 만약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대행서비스를 실행할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2007. 10. 29. (주)한백리서치연구소 대표 김남수 질의)

## 《답 변》

귀문의 경우 후원회가 후원금 납입자에 대한 감사의 전화나 정치자금영수증 수령여부의 확인 또는 영수증 우송 등 단순한 역무를 전문업체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이 경우 대행업체가 감사의 전화 등 단순한 역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나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007. 1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10] 학술단체의 정책토론에 정당관계자 초청

### 《질 의》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연세행정학회에서 다음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하는바, 각 정당에 초청장을 발부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교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사명 : 연세행정학회 창립 35주년 기념 제19차 국가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2. 주제 : 지구온난화 대응전략 - WEO 시대적 사명
3. 일시 : 2008. 3. 19(수) 오후 3시 ~ 7시
4. 장소 : 상록회관 5층
5. 공동주최 : 연세행정학회(명예회장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범국민운동연합총재 이방호국회의원(한나라당 사무총장)  
 자연보호 중앙연맹총재 이수광
6. 후원 : 환경부, 연세대동문회
7. 식순
  - 개회선언 : 아나운서협회장
  - 국민의례
  - 개회사 : 이호식 회장(연세행정학회)
  - 축사 : 환경부장관
  - 포상(다산목민상) : 서울 마포구 자치행정과장  
 부천시 가정복지과 팀장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계장
  - 격려사 : 연세대학교 총장
  - 주제발표 : 환경부 대기보전국장
  - 토론 : 각정당 정책위 위원, 각 시·도 환경담당과장, 환경시민단체장
  - 폐회 : 아나운서 협회장 (2007. 12. 10. 연세행정학회장 이호식 질의)

## 《답 변》

귀문의 경우 학술단체가 순수한 학술 또는 연구목적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정당의 당직자를 초청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학술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7. 12.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 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51호, 2007. 12. 21. 공포]

#### 1. 제정이유

최근 주 5일 근무제의 시행 등으로 도시민들의 농어촌체험·관광과 1사1촌운동 등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와 관련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제도,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제도,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제도 등 도농교류활동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지원·육성방안의 마련(안 제5조 및 제6조)
- (1)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마을 단위 체험·휴양마을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육성이 필요함.
  - (2) 마을 단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 주민은 마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정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을 받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3) 마을 단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육성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가 촉진될 것

으로 기대됨.

나.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근거의 마련(안 제14조)

- (1) 초·중등학생이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중등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 등을 교육감에게 추천하고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초·중등학교에 그 활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3) 건전한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초·중등학생의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도농교류확인서 발급제도의 도입(안 제15조)

- (1) 도농교류자매결연, 농어촌마을에 대한 기부 및 농어촌체험·봉사활동 등을 통한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하여는 농어촌마을에 기부금품을 제공한 자 또는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을 한 자 등에게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시장·군수 등은 농어촌마을·농어촌단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에 기부를 한 자에게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이 행하여진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 사업자는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3) 도농교류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농어촌마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이 활발하여 질 것으로 기대됨.

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선발·활용(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 (1)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어촌지역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 등의 양성이 필요함.
- (2)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마을에

서의 농어촌체험지도 및 농어촌마을해설 등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어촌마을해설가 등으로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어촌마을해설가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3) 농어촌에 대한 지식의 체계적인 전달로 농어촌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농어촌체험·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제도의 도입(안 제21조)

- (1) 농어촌관광 등 도농교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는 민간 차원에서 활동하는 지원기구를 지정·육성할 필요가 있음.
- (2)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활동,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도농교류와 관련된 상담·안내 및 홍보업무를 수행할 경험과 능력이 있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기관·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3) 도농교류지원활동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함으로써 도농교류활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779호, 2007. 12. 21. 공포】

### 1. 개정이유

원산지 표시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한·미 FTA 등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농·축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의 범위 및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의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9호의2 신설, 안 제11조제1항 및 안 제32조의3 신설)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의 금지대상에 식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추가함.

나. 원산지표시대상의 확대(안 제10조의3)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영업장의 범위를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식품에 김치류를 추가함.

다. 식품접객업 영업장소에서 유흥접객행위의 금지(안 제3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소를 제외한 식품접객영업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라.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결격사유에서 가벼운 정신질환자 제외(안 제38조제1호)

그 증세가 가벼운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건강 보호에 관한 법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증세가 가벼운 정신질환자의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함.

마. 영업허가의 취소·정지 사유에 성매매알선행위 등 추가(안 제38조제1호)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성매매·음란영업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또는 일정기간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원산지 표시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지등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③ 건축기본법

[법률 제8783호, 2007. 12. 21. 공포]

### 1. 제정이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는 공적공간이며 나아가 장차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공공성을 지니는 건축물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건축분야의 기본적인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밝히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국가기본계획 및 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후 확정하고, 지역의 현황 및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군·구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정책위원회(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두도록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각각 시·도 건축정책위원회 및 시·군·구 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를 관련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안 제21조)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설정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등에게 권장하도록 하고, 공공시설에는 이를 적용하도록 함.

###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법률 제8789호, 2007. 12. 21. 공포]

### 1. 제정이유

수산동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수중생태계의 보호 및 수산동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확산을 방지하고 수입되는 수산동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수산동물질병의 종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수산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등 수산동물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건강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수산동물전염병관리대책 및 협의회(안 제3조 및 제4조)

(1) 육상의 가축과 구별되는 수산동물의 특성을 반영하고 수중생태계 보호와 수산동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필요가 있음.

- (2)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수산동물전염병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를 둠.
- (3) 수산동물전염병의 관리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수산동물 및 관련 생산품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수중생태계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산동물방역관·수산동물방역사 및 수산동물검역관(안 제7조·제8조 및 제22조)
  - (1)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또는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과 같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안정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방역 및 검역분야의 전문인력관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2) 수산동물방역관으로 하여금 수산동물양식시설과 수산동물집합시설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수산동물방역사는 그 사무를 보조하게 하며, 수산동물검역관으로 하여금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되, 수산동물방역관과 수산동물검역관은 원칙적으로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
  - (3)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및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다.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 등(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 (1)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에 따른 신고, 수산동물전염병의 진단 및 확인절차,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에 따른 수산동물거래의 제한 등 수산동물전염병의 진행 단계별 조치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2)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동물 등의 양식자나 그 수산동물을 진단하거나 시체를 검안한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사료·약품판매자 또는 수산동물이 질병에 걸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의 운송

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을 신고하되, 필요한 경우 수산동물방역기관이나 병성감정실시기관에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수산동물에 대한 역학 조사를 하거나 해당 양식시설을 검사할 수 있고, 수산동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동물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방역관리를 통하여 조기에 전염병을 진단·확인하고 그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린 수산동물의 처리 등(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1) 대량 폐사를 일으키는 수산동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동물에 대하여는 살처분(殺處分)이나 양식시설의 격리,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

(2) 수산동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산동물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 있는 수산동물양식시설의 수산동물을 격리·이동하게 하거나 살처분하게 할 수 있으며,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죽은 수산동물의 사체는 수산동물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매몰·소각하게 하고, 수산동물전염병과 관련된 시설 또는 물건은 소독·소각 또는 매몰하게 하며, 매몰된 수산동물의 사체 또는 물건 등은 2년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하도록 함.

(3)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그 사체 또는 관련 물건에 대한 처리를 강화함으로써 수산동물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방류수산동물의 검사 등(안 제20조)

(1) 종묘 또는 치어으로써 방류되는 수산동물은 수산동물전염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 수중에 방류된 이후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습관으로 인하여 전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염병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방류수산동물을 방류하려는 자는 미리 수산동물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방류수산동물이 수산동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독·격리 또는 살처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3) 면역성이 약한 방류수산동물에 대한 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방류된 종묘 또는 치어의 생존율을 높여 수산자원의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에 관한 조치(안 제23조부터 제37조까지)

(1) 국가간에 수산동물의 수출입이 빈번하고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출입을 통한 수산동물전염병의 이동이 우려되므로 체계적인 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질병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2) 수산동물의 검역대상은 이식용·식용·관상용 및 시험·연구조사용의 살아있는 수산동물과 그 수산동물을 운반·보관 중에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하고, 수산동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동물 등은 수입을 금지시키되 이를 어긴 경우 반송·소각 또는 매몰하게 하며, 수산동물의 검역은 수입검역과 수출검역 및 파견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검역은 별도로 지정된 검역시행장에서만 실시하도록 하는 등 수산동물 및 관련 물건의 검역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3) 수출입 수산동물의 철저한 검역을 통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수산동물 전염병 유입에 따른 대량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수산용동물용의약품의 사용제한 등(안 제40조)

(1) 수산용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수산용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용동물용의약품의 남용을 방지하고 수산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용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수산용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수산동물 양식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⑤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법률 제8790호, 2007. 12. 21. 공포]

### 1. 제정이유

태풍·홍수·폭풍·해일·이상조류 및 적조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하여 줄 수 있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해위험을 일부 정부가 인수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마련하며, 동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출을 보장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에 대한 양식어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여 양식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심의회 설치(안 제2조)

- (1)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사업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둘 필요성이 있음.
- (2) 재해보험대상 양식수산물 및 그 시설물의 선정,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 재보험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 등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및 그 재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심의회를 두되, 동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합리적으로 협의·조정하여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가능하고, 원활한 제도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대상 및 보상범위(안 제4조)

- (1) 재해보험가입자인 양식어업인과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에 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보험의 대상과 보상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2) 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양식수산물과 그 시설물은 그 피해 예상규모, 어업가구의 수, 보험실시로 예상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태풍·해일·이상조류·적조 등 자연재해로 한정하되 그 발생의 빈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대상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3) 재해보험의 대상과 보상범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료 및 운영비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14조)

- (1) 재해보험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인상은 보험료율을 인상시키고 이에 따라 양식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가입율이 저하되는 등 문제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일정 부분 재정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 (2)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의 재정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그 밖에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3) 양식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재해보험의 가입이 확대되고,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 부담을 덜어 수익성이 확대되는 등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보험사업을 조기에 정착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재보험사업(안 제15조)

- (1) 태풍·해일·이상적조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가 재보험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2) 정부로 하여금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해보험사업자와 재보험료·재보험금 및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계약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되, 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보험료와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함.
- (3) 불가항력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의 위험을 국가가 일정 부분 분담하여 보험사들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기금의 설치 등(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 (1) 재해보험사업자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초과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재보험금을 미리 적립하여 두었다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기에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2)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재보험료, 정부 등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기금을 설치·운영하고, 동 기금은 재보험금의 지급 또는 기금의 관리·운영의 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인 금융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3) 재보험금이 적기에 지급되어 재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춘 재원이 확보됨으로써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3.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⑥ 어촌 어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791호, 2007. 12. 21. 공포]

### 1. 개정이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 준공전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어항관리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던 것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재량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폐기물의 정의(안 제2조제8호 신설)

- (1) 폐기물은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경우 어항관리청의 원상회복 조치 명령규정과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폐기물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어항관리청과 위반행위자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음.
- (2) 폐기물을 “폐어구(廢漁具)·쓰레기·연소물(燃燒物)·오니(汚泥)·폐유·폐산(廢酸)·폐(廢)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함.

#### 나. 준공전사용의 허가 시 고려 사항(안 제10조제4항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 준공전사용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앞으로 시행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함.

#### 다. 어항시설의 조사·점검 등(안 제19조)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 현황, 어항시설의 안전상태 등의 조사·점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법률에 근거규정을 신설함.

라. 어항시설 매각 시 조건 부과(안 제27조제2항 후단 신설)

어항 지정권자가 공공단체에게 토지를 우선 매각하는 경우 어항개발 계획에 부합되도록 해당 토지의 용도와 어항개발사업을 위한 허가신청의 기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이도록 함.

마. 어항구역의 폐기물 수거(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인 어항구역에서 폐기물·쓰레기 등을 수거하여 어항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업무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어항청소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어항 점·사용 신고사항의 구체화(안 제38조제1항)

어항시설을 점·사용하려는 경우 어항관리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선박이 기본시설에 접안하거나 계류하려는 경우 등으로 종전에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7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806호, 2007. 12. 27. 공포]

### 1. 개정이유

금강수계의 수변구역(水邊區域)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수변구역에 관한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물 사용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자에 하천수의 사용자를 추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4조의2 신설)

- (1) 수변구역 전체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의 부재로 수변구역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2)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중·장기 수변구역의 관리방향,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등을 포함한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3)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수변구역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변구역 내 설치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안 제5조제2항제1호 신설)

- (1) 수변구역 안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도로·철도를 건설할 때 일시적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됨에 따라 국책사업 시행에 차질을 빚거나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산림훼손 등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음.
- (2) 도로·철도 건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예외적으로 수변구역 안에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 (3) 국책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노선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수변구역의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토지 등의 매수가격 산정방법 등의 명확화(안 제8조)

- (1) 현행 토지 등의 매수업무가 유역 환경청별 지침에 따라 수행되고 있어 4대 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유역 간의 일관성이 결여됨에 따라 주민의 불만 및 업무 추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서 토지 등의 매수가격 산정을 위한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환경 및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추진의 명확성을 높여 민원(民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라.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의 확대(안 제30조)

(1) 일부 하천수의 사용자가 물이용 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어 물 사용자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2) 물이용 부담금 부과대상자를 「하천법」에 따른 모든 하천수의 사용자로 확대하되,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물 사용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수질개선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체의 물 사용량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817호, 2007. 12. 27. 공포]

### 1. 개정이유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한바,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는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부문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도록 현행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지도, 고용장려금 지급 등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임직원 등에게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금지의무를 부과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의무 등(안 제5조제3항·제4항 신설)

- (1)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함.
- (2)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는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
- (3)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안 제27조제1항·제2항)

- (1) 전체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의 수가 1990년 0.6퍼센트에서 2006년 4.2퍼센트로 증가하는 등의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정부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한편,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 수가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함.
- (3)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비밀누설 등의 금지(안 제65조의2 및 제84조의2 신설)

- (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부담금 징수 및 장려금 지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3.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 및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436호, 2007. 12. 7. 공포]

### 1. 제정이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한 정기검사제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및 정기 시설검사제도,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8286호, 2007. 1. 26. 공포, 2008. 1. 27.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위원회의 설치, 정기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의 방법, 어린이놀이시설 손해 배상보험의 내용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안 제2조)

어린이놀이기구의 범위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안전 인증대상공산품으로 정하고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를 포함하여 그네, 미끄 럽틀 등 10가지 유형의 놀이기구로 정하고, 그 어린이놀이기구가 주택 단지, 도시공원, 유치원 등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 시설로 정함.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안 제3조)

(1) 관련 법령과 관리주체의 다원화로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 미비 하였던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

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협력과 관련 전문가집단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함.

- (2)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검사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과 관련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위원회를 산업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함.

다. 정기검사 면제의 요건 및 범위(안 제6조)

- (1) 법률에서 제조업자가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성을 자율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면제의 요건 및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어린이놀이기구가 2회 이상 연속하여 정기검사에서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면제결정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전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2회 이상 연속하여 자체 검사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일부 항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절차(안 제8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고, 정기시설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어린이놀이시설의 손해배상보험의 가입 시기(안 제13조제2항)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의 의무적 보험 가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보험 가입의 시기를 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안전검사기관의 경우에는 안전검사 등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함.

###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481호, 2007. 12. 28. 공포]

## 1. 제정이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제정(법률 제8292호, 2007. 1. 26. 공포, 2008. 1. 27. 시행)되어 5년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 및 사용을 제한하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제한함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정하는 한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관리기준과 사용용도를 정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 종류(안 제2조 및 제3조)

-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를 정하려는 것임.
- (2) 다이옥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등 12가지의 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정하고, 다이옥신 함유폐기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농약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정함.
- (3) 위해성이 큰 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정하여 수출입 등을 제한하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이로 인한 국민의 건강침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안 제4조 및 제5조)

-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조정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취급제한 내용 및 관리기준(안 제17조 및 제18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취급제한 내용 및 관리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 비(B)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로만 제조·사용하도록 하고, 용기나 포장에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도록 하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류벽이나 방지턱 등을 설치하도록 함.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사용용도와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안 제21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1일 최대 생산능력이 5천 톤 이상인 철강 소결로(燒結爐), 3천 톤 이상인 철강 전기로, 1만 2천 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50톤 이상인 동(銅) 압연·압출 및 연신 시설을 운영하는 배출사업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함.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11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503호, 2007. 12. 31. 공포]

### 1. 개정이유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제정,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호적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복역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감보호 및 해제신청에 따른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감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호적과 관련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안 제3조, 제4조제2항, 제5조의3제2항, 제7조제1항·제4항,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제1항).
- 나. 인감대장 및 관련공부 이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같은 시·군·자치구 관내 이송은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송하도록 하여 이송에 따른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제5항 신설).
- 다. 복역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감보호 및 해제신청에 따른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감대장의 인감보호 등 신청사항 등에 관한 관리는 이를 통보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이 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 라. 인감증명발급 및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안 제19조제2항).

###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2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504호, 2007. 12. 31. 공포]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성과중심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지출업무를 수행하고 자금을 지출할 경우 전자자금이체를 통하도록 하여 지출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계연도 개시 전이라도 배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해복구를 지원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위한 사항 정비(안 제45조 및 제47조)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의 명칭을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에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변경하고, 세출예산 과목을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공공질서 및 안전·교육·문화 및 관광·환경보호·사회복지·보건·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함.

나.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항목에 재해복구사업 소요 경비추가(안 제57조)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이라도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예산배정이 가능하도록 함.

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지출업무의 수행 근거 마련(안 제89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 또는 출납원은 지출을 하는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자금지출 시 전자자금이체제도 도입(안 제90조의2 신설)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여 지출을 하는 경우 여비 등 현금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로써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 등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와 협의하여 지급 명령서를 전자적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함.

###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및 제47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시부터 적용한다.

## 1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517호, 2007. 12. 31. 공포]

###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농림수산업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자생산용·종묘생산어업용·양식용 토지와 전문휴양업 및 관광단지 임야 등에 대하여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면허세의 종별 구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재산세 분납세액 기준의 조정(안 제11조의5제1항)

법률에서 재산세 분납의 기준을 납부세액 1천만원 이상에서 5백만원 이상으로 조정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분납세액을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납세액을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하는 등 분납세액의 범위를 하향 조정하여 재산세 증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시킴.

나. 비과세 대상 비영리사업자 범위의 개선(안 제79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교육기관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도시내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 범위에 포함시킴.

다. 고급주택 판단 기준의 개선(안 제84조3제3항 단서 신설)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시 토지와 건물에 대한 통합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원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으로 풀장 등의 부대시설이 설치된 경우 외에는 가액이 6억원 이상일 것을 추가함.

라. 농림수산업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유세 부담 완화(안 제131조의2제3항제10호·제12호·제14호나목 및 제132조제1항나목, 안 제131조의2제3항제15호·제16호 신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서비스업 및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용지, 부설주차장, 전문휴양업용 임야와 관광단지내 임야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종자생산용·종묘생산어업용·양식용 토지 및 주식회사인 농업법인의 소유 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함.

마. 공공사업 및 공익사업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안 제131조의2제3항 제14호다목·제17호 및 제132조제4항제29호 신설)

도시지역을 제외한 준보전산지내 시업(施業) 중인 임야와 견인차량 보관용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공익성이 큰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용 중계탑 부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함.

바. 재산세 부담 상한제 적용을 위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계산 방법의 개선(안 제142조)

재산세 부담 상한제 적용을 위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 사이에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구분의 변경이 있거나 비과세·감면여부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확보하고 세정 운영의 혼란을 예방함.

사. 버스의 대형·소형 분류기준의 조정(안 제146조의4제1항제4호)

관련 법령 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동차세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세에 대한 과세기준으로서 대형 버스의 분류기준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승합자동차의 분류기준과 일치시킴.

아. 면허의 종별 구분의 조정(안 별표)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면허 종별을 종업원의 수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로 세분화하고, 「약사법」에 따른 한약업사 및 약업사에 대한 면허 종별을 제3종에서 제4종으로 조정하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면허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볼링장·에어로빅·테니스장업이 자유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허 종별 구분을 조정함.

###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최근 타시·도 제정조례

## 1 황해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92
----------	-----

제안연월일 : 2007년 12월 21일

제안자 :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장

### 1. 주 문

환황해권 첨단기술산업의 국제협력거점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상생협약에 의거 공동으로 신청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조기지정을 촉구함

#### □ 황해경제자유구역 개요

- 위치 : 경기도 평택시·화성시, 충남 아산시·서산시·당진군 일원
- 면적 : 6,814만㎡ 【경기 2,624(41%), 충남 4,189.7(61%)】
- 지구현황 : 5개 지구(경기 2지구, 충남 3지구)
  - 경기(2,624.0만㎡) : 포승(2,049.6), 향남(574.4)
  - 충남(4,189.7만㎡) : 석문·송악(2,532.9), 인주(1,302.5), 지곡(354.3)
- 계획년도 : 2025년도(1단계 2013년, 2단계 2019년, 3단계 2025년)
  - 단계별 개발진도 :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 2. 제안경위

- 2007년 12월 21일 이주상, 전동석 위원이 서면동의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촉구 건의안을 제22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2007. 12. 21)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출키로 함

### 3. 제안이유

-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국가경제나 지역경제적 측면에서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의 도약과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 개척에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국제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함께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물류 육성을 위해 반드시 지정되어야 할 것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해 각종 세금감면과 노동, 교육, 의료 등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하여 투자를 활성화 하는데 있음
- 황해경제자유구역은 IT, 디스플레이 및 자동차산업의 최대 집적지로 이미 국제경쟁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평택·당진항과 우수한 교통인프라 및 R&D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적지임
- 수도권-비수도권의 공동개발로 지역균형발전의 모범사례 구축
  - ▷ 개발효과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유(Win-Win 전략)
  - ▷ 산업단지의 집적화 및 네트워크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중국 동부연안도시의 빠른 성장에 대응하는 서해안 성장벨트 구축
  - ▷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조기 성과 실현이 가능한 선제투자의 최적지임
  - ▷ 서해안 여타지역(새만금, 서남권)으로 개발효과 확산
-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보완적·차별적 기능 분담으로 경쟁력 배가
  - ▷ 기존 경제자유구역 : 국제비즈니스·물류 중심
  - ▷ 황해 경제자유구역 : 첨단산업 중심

-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지정효과는 전국적으로 48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더불어 16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27만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정됨
- 주한미군기지 이전 집결, 해군 제2사령부 주둔, 공군작전사령부 및 K-55 오산비행장 기지 확장 등 국가안보를 위해 고통받으며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평택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조기 지정이 반드시 필요함

[자료출처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 2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12.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 1. 제안이유

시정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동의와 지지에 기반한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추진을 위하여 정책토론청구제 도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근거 및 정책토론회 개최청구에 따른 주민수를 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정책토론청구대상을 정함(안 제4조).

다. 정책토론 개최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책토론청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정책토론 실시 기한 및 토론방법을 정함(안 제9조,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07. 11. 12 ~ 12. 3)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토론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토론청구) 대구광역시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토론청구 주민수) ① 정책토론회 개최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300명 이상이 연서를 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3명 이내의 토론청구인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토론청구인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토론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청구 대상) 정책토론청구 대상은 청구인들이 요구하는 시의 주요 정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토론청구 내용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중인 사항
5. 토론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미 이 조례에 따라 정책토론을 개최한 정책

제5조(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 ① 정책토론 개최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내지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법조인, 교육자, 언론인으로서 시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3.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 위원수는 재적 위원수의 반수를 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정책토론청구 요건의 심사

3. 정책토론 실시여부 심의·결정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토론 실시 기한) 시장은 토론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론청구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서 토론회 개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토론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토론 방법) 토론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토론자수 및 토론방식 등 토론방법에 대해서는 토론청구인 대표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토론 결과) 시장은 토론 내용의 반영여부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담당부서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업무는 토론청구 대상 업무 추진 담당부서에서 한다.

제13조(수당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자료출처 : 대구광역시의회, <http://council.metro.daegu.kr>]

##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 ① 국가기반재난 발생시 현장조치는 이렇게

#### - 시군구 단위 위기 대응 매뉴얼 작성 완료 -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력, 원유수급, 육상화물운송, 보건의료, 전염병, 식용수의 6개 분야에 대해 기초자치단체가 조치하여야 할 세부 행동 절차 및 요령 등을 수록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완성하였다고 밝혔다.
- 에너지·교통·통신 등 국가기반시설이 마비될 경우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05년 중앙 단위의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06년 시도단위 현장조치 매뉴얼을 작성한데 이어, 금번에 시군구 단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완성하였다.
  - ※ 국가기반재난이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이를 통해 230개 전국의 시군구는 국가기반 재난 발생시 중앙과 지자체간의 재난관리를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가 형성되었고, 이는 국가기반재난을 대처하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국가기반 재난 발생으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에서

복구까지 일련의 재난대응절차 및 조치사항을 정하고

-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비상 계획,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주민 홍보문(안), 주민 행동요령 등을 수록하였다.
- 예를 들어, 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 공급 부족으로 국가기반재난 발생시 시군구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실시, 비상 자가발전기 작동, 시설물 안전점검, 범죄 예방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 또한, 수도시설의 파괴에 따른 식용수 공급 부족시 유관기관과 수직·수평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내 주요 시설물 보호, 비상 용수 공급, 용수원 개발, 주민 질서 유지 등 단계별 대응계획을 추진하여 최소한의 주민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팀장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2008년 상반기 중 국가기반재난 실제 훈련을 실시하여 담당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협조체계를 점검하고 매뉴얼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② ‘정책연구용역 관리’ 한층 깐깐해진다.

### - 활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개정안 내년 1월 시행 예정 -

- 내년 1월부터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발주 단계부터 활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활용도가 낮고, 불필요한 용역은 아예 추진할 수 없도록 정책연구용역 관리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 **정책연구용역** :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용역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 연말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활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동 계획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심의한 후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되면 연구용역을 추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 또한 행정자치부는 주기적으로 연구용역 운영실태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나 감사원에 통보하게 된다. 이를 통보받은 기획예산처나 감사원은 관행적으로 추진한 용역 또는 유사·중복용역 등 부적합한 연구용역 사례가 발견되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시 과감히 예산을 삭감하고 기획감사를 실시하는 등 부적절한 연구용역에 대한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 그리고 용역수행과정에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용역기간에 따라 중간점검이나 품질점검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서 4개월 기간의 용역의 경우 중간점검 2회 이상, 품질점검회의 4회 이상 등 최소 6회 이상 점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용역기간별 중간점검·품질점검회의 기준안》**

연구 수행기간	중간 점검	품질점검회의	
		횟 수	참여 방식
2개월 미만	1회 이상	2회 이상	토론회, 워크숍, 공청회, 설문조사, 현장방문, 보고회 등
2개월 이상~5개월 미만	2회 이상	4회 이상	
5개월 이상~7개월 미만	3회 이상	6회 이상	
7개월 이상	3회 이상	8회 이상	

※ 중간점검은 최대 3회, 품질점검 회의는 월 평균 1회를 기준

- 공무원의 용역참여가 확대되면 당초 발주목적에 맞는 연구결과가 나와 그만큼 부실연구를 방지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유없이 용역기간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 기간도 설정·권고할 예정이다. 표준기간은 3천만원 미만은 2개월, 7천만원 미만은 5개월, 1억 미만은 7개월 등 용역규모에 따라 다르다.
- 이렇게 연구용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 우선 불요불급하거나 관행적으로 추진해 왔던 용역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 등으로 연구 활용도와 용역의 품질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3] 정부위원회 90개 통·폐합 등 대폭 정비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정부위원회 90개에 대하여 통·폐합, 위원(장)직급 조정, 민간 위촉위원 확대 등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총 416개(행정위 44, 자문위 372)로, 행정자치부는 위원회별 운영실태 분석을 거쳐 금번 정비대상을 확정하였다.

※ 참여정부에서 증가한 위원회 : 52개(과거사위원회 9, 자문위 43)

□ 금번 위원회 정비의 주요내용을 보면,

○ 통·폐합 : 17개

- 설치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 및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군인고충심사위원회, 관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등)

○ 소속 변경 또는 위원(장) 직급 하향조정 : 41개

- 기능·성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실무회의 중심으로 운영되어 위원(장) 직급의 하향조정이 필요한 위원회 등(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등)

○ 위촉기준 조정 : 13개

- 민간위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참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위촉기준 조정이 필요한 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통신위원회 등)

○ 위원수 조정 또는 민간위원 위촉비율 확대 등 : 19개

- 위원수 과다로 회의소집·운영이 곤란하여 위원수를 조정하거나,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민간위원 위촉비율의 확대가 필요한 위원회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전자거래정책위원회 등) 등이다.

□ 행정자치부는 2007년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90개 위원회중

- 금년말까지 25개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정비완료하고,
- '08년도에는 38개 위원회를, '09년도에는 27개 위원회를 각각 정비하는 한편, 위원회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로 위원회 정비 및 운영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설치목적이 달성된 위원회는 자동 폐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8년중에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 붙임 : '07년 부처별 정비대상 위원회 총괄내역 1부. 끝.

【 별첨 】

**‘07년 부처별 정비대상 위원회 총괄표**

소 속	위원회 총 수	정비 합 계	통폐합	직급 조정	위촉기준 완 화	민간위원 대 확	위원수 조 정	사무인 력 조 정
건설교통부	37	10		6	2	1	1	
과학기술부	10	1		1				
관 세 청	7	3	1	2				
교육인적자원부	19	7	4	3				
국무총리실	52	12	3	7	2			
국 방 부	12	3	1	1		1		
국 세 청	8	4		4				
노 동 부	15	2		2				
농 립 부	18	3		2			1	
농촌진흥청	3	1			1			
문화관광부	5	1		1				
법 무 부	13	4		1		3		
보건복지부	27	5	3	2				
산 립 청	5	1		1				
산업자원부	20	4	1		1	1	1	
재정경제부	18	2	1		1			
정보통신부	13	3			3			
중소기업청	6	1	1					
통 일 부	5	1				1		
특 허 청	4	2			2			
해양수산부	14	6		2	1		3	
행정자치부	24	2	1	1				
환 경 부	8	7	1	5			1	
국정과제위	12	5						5
기 타	61							
<b>합 계</b>	<b>416</b>	<b>90</b>	<b>17</b>	<b>41</b>	<b>13</b>	<b>7</b>	<b>7</b>	<b>5</b>

※ 총리실 정비위(12개) 주관 : 건교부 2, 교육부 1, 법제처 1, 복지부 1, 산림청 1, 산자부 1, 여가부 1, 행자부 2, 국조실 2

## 4 내 손안의 정보 “M-정보화마을”서비스 실시

- 정보제공과 홍보채널 다양화로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기대 -

- 행정자치부와 SK Telecom이 손을 잡고 휴대폰을 통해 전국 정보화마을의 정보와 각종 체험상품 및 다양한 지역축제 정보를 제공하는 "M-정보화마을" 모바일 서비스를 12월 4일 오픈한다.
- 이번에 제공되는 "M-정보화마을" 서비스는 행정자치부에서 조성하여 운영중인 전국 304개의 정보화마을에 대한 정보와 각 마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체험상품, 주말농장, 축제정보들을 사진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고객의 휴대전화로 직접 각 지역의 지도와 함께 상세한 길안내까지 볼 수 있다.
- 특히 “M-정보화마을” 서비스를 접속하면 고객의 현재 위치에서 휴대전화로 직접 검색이 가능하여 고객 주변에 위치한 정보화마을 및 각 체험상품, 축제정보를 바로 조회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단순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벗어나 고객 위치중심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 네이트 접속(전체메뉴) > 6.위치 > 7.여행엔 > 5. M정보화마을 또는 \*\*90+NATE > 5. M정보화마을로 접속하거나, 정보화마을 접속 단축번호(8001)+ Nate -> 바로 M정보화마을 페이지로 연결 할 수 있다. 정보조회를 제외한 길안내 등의 부가가치를 이용할 경우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 단, 연말까지는 오픈 기념으로 정보이용료 없이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 앞으로, M-정보화마을 서비스에 대한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정보화마을의 정보를 좀 더 고객 중심으로 개발하여 2008년 하반기에는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체험상품을 직접 핸드폰에서 구매 할 수 있는 'M정보화마을 커머스', 체험관광 정보 안내와 더불어 '실시간 숙박예약시스템' 도입, 생산자 중심의 특화된 홍보 진행을 위한 서비스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휴대 가능한 핸드폰을 통한 정보화마을의 정보제공 및 홍보채널 다양화를 통해 정보화마을 인지도 제고와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잘 구축된 고 품질의 콘텐츠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있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 그리고,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3호선 학여울역, <http://festa.invil.org>)에서 개최되는 "정보화마을 Festa 2007" 행사에서 서비스 시연과 함께 시연회에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기념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첨부 : M-정보화마을 구축 및 서비스 계획 1부

< 첨부 #1 >

## M-정보화마을 구축 및 서비스 계획

### □ 추진배경

- 무선 인프라의 발전,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는 환경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로 인하여 소비자 인식 속에 모바일 미디어에 대한 서비스 요구 지속적 상승
- 정보화마을에 구축된 마을정보, 체험관광 및 먹거리 등 정보컨텐츠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K 텔레콤의 무선모바일 인터넷서비스인 Nate의 위치기반서비스와 연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
- ※ Nate의 '위치 서비스' : 개인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와 교통정보 등에 집중된 특화서비스

### □ 주요서비스 내용

- 정보화마을 소개 : 검색 위치에서 가까이 있는 마을 소개 및 길 안내 정보
- 지역정보 : 주변 · 지역 체험 & 주말농장, 마을축제, 여행정보 등

### □ 접속방법 및 사용요금

- 방법1) Nate > 6.위치 > 7. 여행앤 > 5.M정보화마을
- 방법2) \*\*90 + Nate -> 여행앤접속 > 5.M정보화마을
- 방법3) 정보화마을 접속 **단축번호(8001)**+ Nate → M정보화마을
- 정보이용료 : 정액제(월 3,000원, 무제한 이용) 또는 개별 서비스 이용시 부과(건당 150원)
- ※ 12.4일 정식 서비스 오픈후 금년말까지 정보이용료 무료

###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국내 최대 통신사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홍보채널 및 서비스 제공채널 확대로 대국민 인지도 제고와 운영활성화 기대
- 국내 이동통신사(LGT, KTF) 서비스 확대, 정보화마을 쇼핑몰 ([www.invil.com](http://www.invil.com))과 연계한 'M커머스' 구축 서비스 예정('08 하반기)
- 체험관광 정보 안내와 더불어 '실시간 숙박예약시스템' 도입 등('08년)

< 참고자료 >

□ 서비스 구성 세부내용

Depth 1	Depth 2	서비스 설명
마을 찾기	· 마을찾기 & 축제이름 찾기	
이벤트		월별 혜택 공지 및 SPOT성 이벤트 공지
내주변 검색	· 내주변 콘텐츠 리스트	내주변의 정보화마을, 체험 및 주말농장, 축제 정보를 안내
정보화마을	· 내주변 마을 · 지역별 정보화마을	내주변 정보화마을 및 지역별 마을보 (이미지포함) 및 연락처, 볼거리, 먹거리 특산물, 체험관광상품, 지도 및 경로보기 등
Fun 체험 & 주말농장	· 내주변 체험 & 주말농장 · 지역별 체험 & 주말농장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해당정보 세부안내(이미지포함) 및 지도, 경로보기
즐거운 축제가 있는곳	· 내주변 여행정보 · 이달의 마을축제(축제 위주)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해당정보 세부안내(이미지포함) 및 지도, 경로보기

□ 서비스 이용 요금체계

서비스명	요금 현황
데이터 통화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으로 9.1원/1Kbyte</li> <li>· 일반적으로 데이터 안심정액제 상품 사용</li> <li>- 월 1만원 기본 + 초과되어도 3만원 한도</li> </ul>
정보이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으로 *표시 서비스 이용시 건당 150원</li> <li>· M-정보화마을 정보이용료</li> <li>- 내 주변 검색 : 건당 150원</li> <li>- 지도보기/경로보기/사진더보기 등 정보 클릭시 : 건당 150원</li> <li>· 만약, <b>여행&amp; 정액제 상품 가입시 : 월 3,000원(무제한 이용)</b></li> <li>※ 기타 정보화마을 모든 콘텐츠 정보이용료 무료 제공</li> <li>→ 초기 적극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서비스 오픈후 한달간은 정보이용료 무료 제공</li> </ul>
총 서비스 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안심정액제 + 정보화마을 여행&amp; 정액제 가입한 경우</li> <li>- 월 <b>Min 13,000원 ~ Max 33,000원</b></li> </ul>

# M-정보화마을 서비스 화면(예시)

□ 초기화면 → 정보화마을 메인 화면



여행 & 메인 페이지



M정보화마을 메인 페이지

□ 정보화마을 메인 화면 → 마을 소개 → 길안내



## 5 전국 시·도 출연연구원 경영평가 최초 실시

- 경영 및 연구분야 전반 기대 이상의 평가 받아 -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전국 시·도 출연연구원의 경영평가 실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평가는 1991년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을 필두로 2005년 전북발전연구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후 처음 실시한 평가이다.

- 시·도출연연구원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방연구원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정책의 방향설정 및 지방혁신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 표준안에 의거 지난 6월부터 10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 선정한 평가기관에 의해 경영분야 3개 지표(책임경영, 경영관리, 고객만족), 연구분야 5개 지표(연구사업 분야의 적정성, 연구사업 관리 체계의 효율성, 산·학·연 협동연구의 활성화, 연구사업 성과의 우수성, 연구 성과의 확산 및 활용도)에 대하여 서면평가와 현지방문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평가개요 : 붙임 1)

□ 올해 첫 실시한 2006년도 지방연구원 경영평가 결과

○ 14개 시·도출연연구원 평균은 81.66/100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분야 평균이 경영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시·도별 자체 선정한 경영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이므로 평가결과를 근거로 연구원별 순위는 매기지 않기로 했다

## □ 시·도출연연구원에 대한 분야별 평가결과

### <경영분야 평가결과>

- 경영진의 비전 및 전략이 명확하고, 연구원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이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되었으며
-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연구원별 전략이행을 위해 조직구조를 개편하고, 인사관리, 재정·예산관리 및 내부평가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다만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세부적 실천계획이 다소 미흡하고 재원확보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연구분야 평가 결과>

- 연구사업 선정의 적정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수탁과제 비중이 높은 점, 특정분야 연구에 다소 편중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연구사업 관리체계도 효율적이라 평가되었으나 연구과제 배분의 합리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되었고
- 산학연 협동연구 활성화 부문에서는 국내산학연 협동연구는 활성화되어 있으나 국외 산학연 활동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연구사업성과 우수성 부문에서는 기본과제의 연구보고서는 우수하나 국내외 학술지 게재 및 학회발표 실적은 전반적으로 미흡하였다
- 연구성과의 확산 및 활용도면에서는 DB구축, 관련기관 배포, 메일링 서비스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정책활용도 및 연구결과 활용도 조사는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

□ 금번 경영평가지 우수사례로는

- 5대 핵심프로젝트, 64개 과제에 대한 지원연구를 수행하는 창의시정 지원사업(서울), 중앙정부나 민간기업에서 계획 또는 추진 중인 사업에 선 대응하기 위한 이슈브리핑 제도(전북)와,
- 지역특화 부설연구센터 운영(울산), 도내 11개 대학 산학협력단장과 인간·생명RIS 연구회를 창립, 지역에 대한 기초연구 수행을 지원(강원)한 사례가 있으며
- 기타 성과급적 연봉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대구·경북), 기초 지자체의 현안과제 연구를 위한 시·군담당제(강원), 용역과제 타당성 사전 검토(전북), 연구사업결과 평가의 공정성확보를 위한 연구심의위원회 운영(경남), 유사 중복 연구방지를 위한 기본연구사업 선정시스템 운영(제주)등이 우수사례로 꼽힌다

□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출연연구원에 통보하여 우수사례에 대한 상호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방연구원별 우수사례 및 개선·건의사항,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도 출연 연구원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정책개발기능을 제고시켜 나아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붙임 : 지방연구원 경영평가 우수사례

〈붙임〉

## 지방연구원 경영평가 우수사례

구 분	경영평가 우수사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의 창의시정 지원사업 추진으로 5대 핵심프로젝트 64개 과제 지원연구</li> <li>◆ 국제 산·학·연 협동연구 활성화 사업미국 델라웨어 대학교와 연구교류협정 체결 등 추진</li> </ul>
대구경북개발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으로 연구능력 향상 및 생산성 제고</li> <li>◆ 다면평가제 도입으로 평가의 정확성 및 객관성 확보</li> </ul>
인천발전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1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구여행 제도(자부담 원칙)를 실시하여 연구원의 국제화 감각증진 정보교류 계기 제공</li> </ul>
대전발전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결재 실시 등 경영정보화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화 제고</li> </ul>
울산발전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화 부설연구센터(울산학연구센터, 경제동향분석센터, 여성가족정책센터)운영</li> </ul>
경기개발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입 박사에게 대해 전공분야별 관련기관 정책현장방문제도 운영</li> <li>◆ 연구과제 착수 시부터 종료 시까지 일정, 인력, 결과물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관리시스템 운영</li> </ul>
강원발전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개 시·군별 담당연구원을 지정하여 시군의 현안과 연구과제의 연계창구로 활용하는 시·군 담당원제 운영</li> </ul>
전북발전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나 민간기업에서 계획 또는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선 대응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이슈브리핑 제도 운영</li> </ul>
경남발전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사업결과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심의위원회 운영</li> <li>◆ 새로운 연구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능동적 연구진행을 위해 5개년을 기간으로 하는 연구원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GNDI 비전2010)</li> </ul>
제주발전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평가 결과를 연봉 및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제공</li> <li>◆ 기본연구사업 선정시스템 운영으로 유사, 중복연구 등 방지</li> </ul>
충남여성정책개발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기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 개발</li> </ul>

## ⑥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내년말까지 전국적으로 가능해진다.

- 행자부, 지방세정보화 성과보고회를 통해 추진계획 밝혀 -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그동안 각각 달랐던 전국 220개 지방자치단체(서울제외)의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지난 12월 17일자로 전부 표준화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 보급된 81개 시·군·구 지역에서만 가능하던 지방세 신고·납부 등 인터넷 지방세종합서비스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의 서비스 지역도 내년 말까지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국 어느 곳의 지방세도 인터넷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게 된다
- 그 동안 지방세는 자치단체별로 정보화를 추진하다 보니 정보화가 앞선 일부 대도시 지역에서만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자치단체 지방세는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 납부가 가능한 일부 대도시 지역의 경우에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만 납부할 수 있어 전국 지방세를 한곳에서 납부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 행자부는 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중앙단위에 전국 지방세를 한 곳에서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택스(WeTax)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7월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다

- 위택스는 개통 후 5개월이 지난 12월 현재 75개 시군구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해당지역 전체 부과건수 중 8%(669/8,045천건), 납부금액 2,427억원의 인터넷 납부율을 보이고 있다

○ 이제 지방세정보시스템이 표준화됨에 따라 위택스 서비스 지역도 빠른 시일내에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서울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현재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한 서울 지역의 경우에도 내년 말까지는 위택스를 통해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이와 관련 행자부는 12. 24(월), 자치단체 지방세 운영책임자 및 관계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05년부터 추진한 지방세정보화 추진 성과 보고회를 열고

지난 3년간 추진하여온 지방세정보화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할 과제를 공동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붙임 : 인터넷 지방세종합서비스(WeTax) 소개.

## 인터넷 지방세종합서비스 (WeTax) 소개

### □ 위택스(WeTax) 란

- WeTax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및 과오납금 환급, 자동이체 등이 가능하고 질의답변사례 등의 정보를 검색조회 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 시스템의 브랜드임

※ WeTax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www.wetax.go.kr](http://www.wetax.go.kr)

### □ WeTax의 주요서비스 내용

- 전자신고 : 지금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방식으로 신고 받아온 취득세(부동산),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레저세등의 법정신고사항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 전자납부 : 재산세, 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를 금융기관 수납창구를 통해 납부하던 것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 전자신청 :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신청, 자동이체 신청등 지방세 관련 민원신청을 인터넷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서비스
- 전자조회 : 지방세 부과내역, 납부내역 등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 지방세정보조회 : 지방세 심사결정, 질의회신 사례, 지방세 통계 등의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

# 위택스 서비스 개통지역

http://www.wetax.go.kr - 위택스 OPEN - ...

행정자치부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WeTax)**  
 인터넷 신고납부 서비스 개시 안내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지방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고 과오납금 조회, 자동이체 신청등의 지방세 민원처리 등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납부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서비스 가능지역

시도	시군구
경기도	수원시, 과천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성시, 광주시, 연천군,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오산시, 의왕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김포시, 이천시, 광명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구, 서구, 남구, 동구
강원도	삼척시, 평창군
충청남도	당진군, 천안시, 아산시
경상북도	안동시, 구미시,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문경시,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의성군, 울진군
경상남도	마산시, 창원시, 사천시, 김해시, 양산시,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진주시, 통영시, 의령군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장성군, 담양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해남군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서귀포 행정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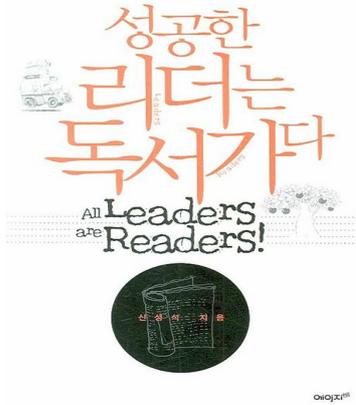
\* ■ 12월 17일 서비스 추가 개통지역  
 \* 2008년까지 전국 확대 적용 예정

하루동안 미창을 열지 않음  CLOSE

완료 Internet

[자료출처 :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 부록 : 행복한 책 읽기



도서명 : 성공한 리더는 독서가다  
 저자명 : 신성식  
 출판사 : 에이지21  
 출판년 : 2007년  
 페이지 : 230  
 가 격 : 10,000원

평범한 비즈니스맨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김성열 과장. 어느 날 승진이 될지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좀 더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던 중 독서관인 본부장의 조언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여 책을 읽게 되는데... 과연 독서를 통해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단지 넘쳐나는 지식뿐일까?

이 책은 '책 읽기'가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보여준다. 싸이월드 '직장인을 위한 책 읽기'의 카페지기인 저자는 독서관인 직장인들의 사례를 많이 접하였다. 그리고 독서가 얼마나 삶에 유익한지를 한 권의 책으로 소개하기에 이르렀다. 독서를 어떻게 하느냐는 방법론보다는 그 필요성과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문은 주인공 김과장이 '독서'를 통해 각종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보여주면서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직장인이나 독서에 좀처럼 취미를 붙일 수 없었던 일반인에게 책 읽기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그리고 일회성 책 읽기가 아닌 꾸준한 독서의 길을 안내한다.

저자는 단순히 '독서'가 좋을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겪을 수 있는 일을 보여주며 '독서'가 직장, 가정,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책을 읽으면 성공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힘차게 독서가로의 첫 걸음을 내딛도록 해 준다

[자료출처 : 인터넷서점]